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案)

議案	148
番號	

提出年月日 : 1992. 8. 18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都心內에 綠地空間을 確保, 市民에게 푸르고 快適한 休息公園을 提供하기 위하여 長期的으로 綠地基金을 造成, 主要公共機關·團體등이 移轉時 適地를 段階的으로 買入, 休息公園으로 造成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特別會計의 設置(案 第2條)

基金의 效率的인 運營을 圖謀하기 위하여 市에 “綠地基金 造成 事業 特別會計”를 設置運營함.

나. 基金의 造成財源(案 第3條)

- (1)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每年 一般會計 純歲計 剩餘金의 10% 以上)
- (2) 市民 自律的 誠金 및 獻樹

다. 基金管理委員會 設置(案 第4條)

基金의 造成 및 運營,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綠地基金管理委員會”를 둠

라. 委員會 構成(案 第5條)

- (1)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

- (2)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이 되며 委員은 市 本廳의 關聯 室·局長과 各 區廳長 및 專門分野의 大學教授등으로 構成함
- (3) 委員會 業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幹事 1名을 두되, 幹事는 綠地課長이 됨

마. 委員會의 機能(案 第6條)

- (1) 基金事業의 基本計劃 樹立에 관한 事項
- (2) 基金의 造成, 積立 및 運用과 決算에 관한 事項
- (3) 其他 基金事業에 관하여 委員長이 附議하는 事項

바. 會議(案 第7條)

- (1) 委員會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
- (2) 定期會議는 事業計劃 樹立 및 基金決算을 위하여 年2回 開催하며, 臨時會議는 委員長이 必要時 召集
- (3) 會議는 委員 3분의 2 以上の 出席과 出席委員 3분의 2 以上 찬성으로 議決

사. 基金의 出納(案 第8條)

基金의 出納은 大田直轄市 財務會計 規則을 準用하고 基金管理에 必要한 基金 預託證書, 支援名簿, 現金출납부등 備置

아. 基金의 運用(案 第9條)

- (1) 都心圈內의 主要公共機關 移轉에 따른 綠地空間 確保를 위한 土地買入 및 公園造成

(2) 公園・綠地造成事業 推進 및 調查研究 活動

(3) 其他 綠地造成에 關聯하여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자. 基金管理 公務員(案 第10條)

基金出納을 위하여 基金出納 命令官과 基金出納 公務員을 두되 基金 出納命令官은 環境綠地局長으로, 基金出納 公務員은 綠地係長으로 함

차.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案 第11條)

地方財政法中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에 관하여는 經理官 및 徵收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 命令官에게 支出員과 出納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에게 이를 準用함

카. 議會 報告(案 第12條)

市長은 基金事業計劃 樹立 및 決算에 관한 事項을 每年 議會에 報告

타. 關係規定의 準用(案 第13條)

法令 및 이 條例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一般會計의 例에 의함.

파. 施行規則(案 第14條)

이 條例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함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대전직할시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시민 자율적 성금 및 헌수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한다.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의 관련 실·국장과 각 구청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직할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 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전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 출납 명령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기금 출납공무원은 녹지계장으로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의회보고) 시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